

2018년도 「호국장학생」 선발 계획

□ 목 적

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대학 「재학생」 자녀들 중 「호국장학생」 선발 및 장학금을 지급하여 軍 사기 및 복지증진에 기여

□ 방 침

- 대학 재학생('18학년도 신입생 제외) 중 성적우수자와 배려대상자(다자녀, 한부모가정, 장애 3급 이상, 공상자) 중 성적 순 1,000명 선발 지급
- 장학금 지급은 가용재원을 고려 국고지원 대학, 등록금 실납부 금액이 100만원 미만자, 장학금 중복 지원(수혜)자 등 지급대상과 학교를 제한
* 호국장학생 지급前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금액(국군재정관리단)을 포함, 등록금 실납부 금액을 초과하여 중복지원이 된 경우, 군인자녀 학자금 초과 대부금액(국군재정관리단)을 우선적으로 상환처리 후, 호국장학생을 지급
- 정규학기 초과등록자(졸업연기·복수전공·기타), 12학점 미만 등록자, '18년 6월 이전 졸업자는 대상에서 제외
- 장학금 지급횟수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수업연한에 따라 지급제한 (2년제 ⇨ 1회, 3년제 ⇨ 2회, 4년제 ⇨ 3회, 5년제 ⇨ 4회, 6년제 ⇨ 5회)
* 지급 횟수는 재학생으로 받은 장학금부터 누적 적용
- 신청서 작성 / 제출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며, 장학금 신청누락으로 인한 추가 또는 소급지급은 없음

□ 세부계획

- 지급대상자(아래기준 모두 충족)
 - 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대학 재학중인 자녀로 2018학년도 1학기(전반학기)를 등록한 재학생(2학년 이상), '17학년도 연간 평점평균 백분위 성적이 92점 이상 자, 배려대상자(다자녀, 한부모가정, 장애, 공상자) 중 성적이 85점 이상 자 중 1,000명 선발
※ '17년도 이수학점 : 24학점 이상 (1개 학기당 반드시 12학점 이상 이수)
(100분위 환산성적 미기재 시 '잡코리아' 취업사이트 학점변환시스템 기준적용)
※ 성적우수자 : 백분위 평균 92점 이상(평점평균 4.1/4.5, 3.92/4.3, 3.66/4.0 이상)
배려대상자 : 백분위 평균 85점 이상(평점평균 3.5/4.5, 3.36/4.3, 3.14/4.0 이상)

- 배려대상자는 다자녀(3명 이상), 장애인(부모 및 본인·형제·자매 중 3급 이상), 한부모, 공상자(국방부 훈령 제1691호 분류번호 적용:1-1, 1-3, 2-2, 2-3, 2-6, 2-12)로 성적이 충족되는 자

※ 다자녀·공상자는 신청인 기준, 한부모·장애자는 대학생 자녀 기준

- 해당 학부모가 '18년 2월 1일 현재 재직(휴직 제외) 중인 자
- 재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자녀는 본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일 경우에 지급
- 교환(교류)학생으로 성적산출이 불가능 시 국내대학 직전 재학년도 성적 적용
- '18년 1학기 복학/편입생은 직전 재학년도의 성적 적용
- 성적은 성적증명서상 백분율을 우선 적용하고 백분율이 없는 경우 학점을 백분율로 환산 적용(백분율 성적산출 불가자는 선발에서 제외) 후 각 요건별 성적 상위자 순으로 1,000명 선발

구 분	성적우수자	다자녀가정	한부모가정	장애가정	공상자
선발 인원(명)	500	400	50	30	20

* 배려대상자 중 결원 발생 시 선발우선 순위는 공상, 장애, 한부모, 다자녀 순

- 국외대학은 '18년 3월 현재 재학 중인 재학생(단, 2018년 4월 졸업생 제외)

○ 지급대상학교

-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포함된 학교 (대학 / 전문대학 등)
- 대학 /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(2년 이상 교육과정)
 - ※ 폴리텍대학, 한국예술종합학교, 한국전통문화학교, 한국과학기술원(KAIST)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(2년 이상 과정) 등
- 국외대학 : 해당국가에서 공식 인가된 2년제 이상 교육과정

※ 지급제외학교 : 석·박사과정 신청 불가

- 등록금이 소액인 한국방송통신대학, 사내대학, 국비대학(사관학교, 경찰대 등)
- 의학전문대학원 과정, 국외대학 언어연수 과정 (2년 미만 교육과정)
-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 (시간제,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/ 학점은행제 등)

○ 지급액 : 1인당 100만원

○ 신청기한/이의제기 : '18년 4월 30일 / '18년 6월 중(1주일)

※ 신청기간 이후 접수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(추가지급 없음)

○ 개인 구비서류 / 첨부서류

• 호국장학금 신청서 (원본) : [별지 # 1]	1부
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및 군인자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신청인 동의서 : [별지 # 2]	1부
• 성적증명서('17학년도 성적) (원본) * 편입생은 편입전 학교 최종학년 성적증명서, 복학생은 휴학전 학년 성적 제출 * 교환(교류) 학생으로 '17년도 성적산출 불가시 국내대학 직전 재학년도 성적증명서 제출 *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환산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대학 발행 백분율 환산표 추가제출 (국외대학은 한글 번역문 포함)	1부
• 국외대학생은 입학허가서(사본) 추가 제출(해당 경우) * 호국장학금 기수령 자녀 생략, 최초 신청자 또는 학교(학력) 변동자 제출	1부
• '18년 1학기 복학생은 학적부 추가 제출(해당 경우)	1부
• '18년 1학기(전반학기) 등록확인서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	1부
• 신청인(현역 군인/군무원)의 가족관계증명서 (원본) *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/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(생년월일 식별 가능)	1부
• 배려대상자 중 장애, 공상자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(사본) * 장애 증명서, 공상자 (공무상병인증서, 전공상 심의 의결서 등)서류 제출	1부
• 신청인(현역 군인/군무원) 본인명의 입출금식 통장 (사본)	1부

○ 지급시기 / 방법 : '18년 6월 29일, 신청인 개인통장으로 일괄지급

○ 접수방법: 부대 인사담당부서 제출 (담당자는 부대단위로 통합, 우편 또는 방문접수)

- 국방부분부, 국적부대(별), 육·해·공군본부는 부·감실·단별 통합
- 육군 ⇨ 사단급 이상, 해·공군 ⇨ 여단급 이상으로 통합
- * 공문/연명부 ⇨ 국방인트라넷 전자문서 수신 불가 (공문은 외부기관으로 출력 후 제출)

□ 행정사항

○ 호국장학금은 『**중복 지원의 방지 법률**』 적용, 중복 지원(수혜)자 확인

-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금액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 내 에서만 가능 (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, **중복 지원의 방지**)

* **현역군인**은 호국장학금 지급前 **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금액**을 포함, 등록금실납부 금액이 초과된 경우 학자금 초과 대부금액을 국군재정단에서 우선 상환처리 후 지급하며, **군무원 학자금 대출자**는 호국장학금으로 인해 등록금 범위가 초과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학자금 초과금액을 상환 해야 함.

* **학자금 중복지원 사례 및 해소(대출상환, 장학금반환) 방법**

- 중복지원 사례 :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 시

-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400만원이라고 가정 후 국군재정단의 학자금 대출이 300만원,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100만원, 호국장학금 100만원을 받았을 경우

⇒ 대출금 300만원 + 국가장학금 100만원 + 호국장학금 100만원 = 500만원

따라서 자녀의 **등록금 400만원보다 100만원 초과로 중복지원**에 해당됨

* 학자금 대출 없이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400만원 이상 수혜를 받아도 중복지원에 해당됨

- 중복지원 시 해소 방법

①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간 중복지원 발생 시 : 대출금을 우선 상환 조치
(현역군인은 국군재정관리단, 군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상환 처리)

② 기관별 장학금 간 중복지원 발생 시 : 각 기관 협조 후 반환 조치

※ 중복지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및 대출금을 수혜 받을 수 없으며, 학자금 초과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법적으로 시행됨

○ 장학금 문의 및 신청

- 전화번호 : 軍) 900-7731 / 일반) 02-748-7731

- 주소 : ㉠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층
호국장학재단 장학사업담당자 앞

- 신청 접수 확인/선발자 발표 : 주 단위 인트라넷 게시/18년 6월 22일(예정)

- 軍인트라넷 호국장학재단 홈페이지 : www.mnd.mil (국방허브) ⇨

주요응용체계/자료(클릭) ⇨ 주요홈페이지(호국장학재단) ⇨ 공지사항

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

- 호국장학금 신청인은 신청서에 빈칸이 없도록 기록하고, 현역군인은 군번을, 군무원(예비군지휘관 포함)은 순번을 정확히 기재할 것
- 신분구분 란은 각 군별 현역군인/군무원으로 구분, 신청 유형(성적우수, 다자녀, 한부모, 장애, 공상자) 해당란에 ○ 또는 √ 표시(신청유형내 중복 체크 가능)
 - ※ 부부 현역군인(군무원 포함)은 부부 중 1명만 신청, 공상은 국방부 훈령 제1691호 적용
- 세대당 재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
 - 호국장학금 신청서에 신청대상 자녀를 모두 기록하고, 3자녀 이상일 경우는 신청서 추가 작성, 성적증명서는 자녀별로 각각 구비서류를 첨부할 것
 - ※ 본인 및 배우자는 신청불가
- 구비서류는 학교명, 성명, 발급일자, 납부금액, 학점 등 식별 가능한 서류제출
- 일반E-메일은 軍 메일이 아닌 naver, daum, google, hanmail 등이며, 학년 란은 2018년 3월 현재 학년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 기준으로 제출
- 입금통장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명의 입출금식통장으로 은행명 / 계좌번호 식별이 가능토록 복사하여 첨부할 것 (가족, 자녀명의 통장 지급불가)
- 성적증명서에 해당 대학의 백분율이 없는 경우 “잡코리아” 취업 사이트 (jobkorea.co.kr)의 학점변환시스템 적용하여 산출
- 성적산출 시 백분율은 소수둘째자리, 학점은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
- 신청인, 확인관 연락처는 직접 통화할 수 있는 軍 전화, 휴대전화, 자택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(신청서류 오류발생시 신청인 / 확인관 통화)
- 당해 연도 MIU자녀 장학금 수혜자는 호국장학금 지급 불가(중복 수혜로 제외)
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작성, 불이익이 없도록 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※ [별지 # 2 참조]
- 해당부대 지휘관(실무자)은
 - 호국장학금 지급계획을 적극 홍보, 신청기간에 누락자가 없도록 관심
 - 신청서 작성 시 오류 / 빈칸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용을 반드시 확인
 - ㉠ 신청인 / 자녀성명, 연락처, 확인관, 부대(기관)장 직인날인 등
 - 부대단위(제대별)로 신청 연명부를 작성, 공문과 함께 제출 ※ [별지 # 3 참조]
- 신청서 양식 / 구비서류는 반드시 A4 규격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
- 개인 성적(백분위, 평점 등) 허위 조작시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영구 자격 박탈
- 부대별 접수현황은 국방인트라넷 재단홈페이지에 주 단위 공지(예정)